



일시	2023.08.16.(수) 15:00
장소	제주시청 1별관 회의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회 의 록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윤은경 	김영택 	안우진

제 주 시

회의명칭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전체회의
회의주관부서	기획예산과
회의개최일시	2023년 08월 16일 15:00~
회의장소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
회의 공개여부	공개
참석자명단	<p>위원 42명 중 36명 참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 : 김덕범, 김성건, 박경호, 김승희, 고정학, 김기범, 강명조, 오영수, 고흥범, 김태원, 이호성, 김오남, 김두혁, 윤용팔, 문정복, 이동화, 김충임, 원성현, 흥성철, 문석희, 고명철, 현상익, 고성룡, 강무룡, 김양택 ○ 당연직 : 안우진, 김형태, 김미숙, 강성필, 변현철, 김성哲
회의 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 2. 국민의례 3.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 4. 폐회
상정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1호) 읍면동 지역사업 결정 현황 보고 - (안건 2호) 지역참여사업 선정 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호) 편성불가유형 사업 심사제외 여부 결정 2-2호) 제출한도 초과사업 심사제외 여부 결정 2-3호) 지역참여사업 심사방법 결정 - (안건 3호) 도 제출 시정참여사업 선정(안)
위원별 발언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첨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지역사업 결정 현황 보고 - 편성불가유형 사업 심사제외 결정 - 제출한도 초과사업 심사제외 결정 - 지역참여사업 심사방법 결정 - 도 제출 시정참여사업 결정
비고	기타 회의 운영과 관련된 참고사항 기재

회의록

■ 간사(기획예산과장)

- 회의 진행순서 소개
- 위원 소개
- 성원보고
 - 전체 위원 42명 중 참석 36명, 불참자 6명

■ 위원장(부시장)

- 개회선언
- 인사말씀

【회의진행】

■ 간사(기획예산과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은경입니다.

오늘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제 위원님 소개 및 성원 보고, 개회 선언 후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참고로 좌석 배치는 편의상 읍면동 의원 전문직 의원 당연직 의원 순으로 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부터 새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대해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읍면동 의원 전문가 의원 당연직 의원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소개 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김영택 부위원장입니다.

■ 부위원장(이호동 김영택)

- 안녕하십니까

■ 가획예산과장

- 한림읍 김충희 위원입니다.
- 애일읍 고정학 위원입니다.
- 구화읍 김기범 위원입니다.
- 조천읍 강명조 위원입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입니다.
- 우도면 고흥법 위원입니다.
- 일도1동 김태원 위원입니다.
- 일도2동 이호성 위원입니다.
- 이도1동 김오남 위원입니다.
- 이도2동 김두혁 위원입니다.
- 삼도1동 윤용팔 위원입니다.
- 삼도2동 문정복 위원입니다.
- 용당2동 이동학 위원입니다.
- 화북동 김충의 위원입니다.
- 봉개동 흥성철 위원입니다.
- 아라동 문석희 위원입니다.
- 오라동 고명철 위원입니다.
- 연동 현창익 위원입니다.
- 노령동 고성룡 위원입니다.
- 외도동 김무룡 위원입니다.
- 김덕범 위원입니다.
- 김성건 위원입니다.
- 박경호 위원입니다.
- 김성哲 도시건설국장입니다.
- 변현철 능수축산국장입니다.
- 흥경찬 청경환경국장님은 현안 업무 추진으로 불참하여 환경지도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동원 환경지도과장입니다.
- 오효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와 출장으로 인해 불참하여 우담도서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아 우당도서관장입니다.
- 강성필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 김미숙 복지위생국장입니다.
- 김형택 안전교통국장입니다.
- 김창완 자치행정국장님은 현안 업무 추진으로 불참하여 총무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흥은영 총무과장입니다.
- 삼양동 원성현 위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의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위원 42명 중 참석 36명 불참 6명으로 성원 되었음을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부시장)

- 네 성원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기획예산과장)

- 이어서 제주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위원장이신 안우진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네 안녕하십니까 모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아주 빡어야 되는데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는 경우에 모시게되어 최송스럽습니다.
오늘 주민참여예산 지역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도 이렇게 폭염임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 제6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2년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시민들의 신청과 각 읍면동 지역협회에서 발굴된 사업을 검토하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민선 8기 공약인 주민참여예산의 1% 확대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90억 원이 증가
되어 200억 원에서 29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부터는 읍면동 지역참여사업에 대하여 제주시가 사업을
최종 결정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위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 발전과 현안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이 적극적이고 상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지금부터는 제주시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위원장이신 안우진 부시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
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고요
안건 심사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후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먼저 배부해 드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회의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전년도 건의사항에 따른 2023년도 주민참여 운영 계획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민참여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읍면동별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일괄적인 배분은 불합리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반영 사항으로는 지역 사업비의 증액은 못되었으나, 참여 사업의 경우 9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광역, 청년, 현안 사업비 증액으로 총 사업비가 200억 원에서 290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 두 번째로 패널티 부여에 따른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시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도 일괄적인 패널티 부여는 불합리하다고 건의하였습니다. 반영 사항으로는 전년도 전액 미집행과 80% 미만 등 미집행 금액에 대한 전액 패널티 부여 방식에서 집행률, 구간별에 따른 패널티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 변경 심의를 통한 사업 변경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세 번째로, 투표 방식 변경 요청에 대한 사항입니다.
온라인 투표로 인해 고령자의 참여 어려움에 대한 투표 방식 변경을 건의하였습니다. 반영 사항으로는 오프라인 투표인 경우, 본인 확인 및 1표 투표 확인이 어려워 온라인 투표 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신 지역참여사업 선정 시 투표 절수 반영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상 2022년도 주민참여조정협의회 회의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 이어서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 규모는 도 전체 290억 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업부는 총 66억 원으로 읍면지역은 각 4억원, 동 지역은 각 2억 원씩 기본 배정되고 있으며,
- 속의형 주민참여예산 시범 읍면동 10개소에 인센티브 5억 원이 추가 배정되었습니다.
지역참여사업은 지역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읍면동이 경쟁하여 편성되는 사업으로 제주시 배정 예산 42억 원과 지역사업 패널티에 따른 감액 사업비 2억 8,500만 원이 합쳐서 총 44억 8,5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 시장참여사업은 시 본청 부서에 편성되는 사업으로 제주시, 서귀포시를 구분하지 않고 총 50억 원에 배정되었으며 제주시 지역참여사업비 42억 원의 120%인 50억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도에서 추진하는 광역사업, 청년 사업은 각각 20억 원이며 현안 사업은 13억 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편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예산 편성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취지의 제정성, 사업의 공공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민간 보조 사업인 경우 보조금 실리 및 생산 절차를 준수하며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되 읍면동 소관 사업에 한하여 90%의 보조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등 자본 형성적 개선 사업은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 불가 사업 유형으로는 주민 갈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한 사업, 특정 단체, 특정업계에 권속되는 수혜형 사업, 마을회관, 경로당 등 별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 기 보조 사업 등으로 실시 후 수익이 창출되는 시설물에 대한 단순 보수 사업, 토지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 관련 사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등이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은 경우 운영 계획에 편성 배제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편성 절차는 지역 사업의 경우 읍면동별 배분의 범위 내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역 참여 사업은 제주시 지역회의 조정회의에서, 시정 참여사업 및 광역, 청년 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및 오리엔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둘째 달라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지역사업과 지역참여사업에 대한 사업 결정 권한이 분리되었습니다. 지역사업은 각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지역참여사업은 제주시 지역회의 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개정되어, 읍면동 지역회의와 시 조정회의회의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업 한도도 최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시 조정회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당연직 위촉을 폐지하고, 광모를 확대하여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2024년도 제7기 구성 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가 총 290억 원으로 확대되고 배분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사업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며 참여사업은 지역참여사업 70억 원, 시정참여사업 5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광역사업, 청년 사업이 각 20억 원으로 배정되고 현안 사업이 신설되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상시 접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네 번째로 민자 민영 보조 사업의 보조율이 90% 일괄 적용 방식이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되 읍면동 소관 사업에 대해 보조율 90%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변경에 대해서도 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에 반영하도록 변경신의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그 외에 달라진 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기획예산과장님 주고 하셨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혹은) 침안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사업, 참여사업 종류가 있는데 면성 규모는 총 290억 원이고 지역사업 117억 원 중

제주시가 66억 플러스 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읍면동에서 결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역참여사업입니다.

- 지역참여사업이 오늘 조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사업인데 이게 제주시가 이제 42억 플러스 패널티 감액 금액이 들어와서, 44억 8천5백만 원 규모로 오늘 심사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 그 다음 시정참여사업은 도에다가 어떤 사업을 오늘 결정해서 올릴 것이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건은 제주시의 지역참여사업 42억 원의 120%인 50억4천만 원 범위 내에서 도에 올리면 다시 심사하여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 밑에 쪽에 이제 광역사업 청년 사업 현안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안 사업은 이제 연중 수시로 접수 받아서 신청을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이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안건 1호입니다. 읍면동 지역사업 결정 현황 보고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자료 5페이지입니다. 2024년 읍면동 지역 사업은 각 지역회의에서 결정되어, 지역회의 조정 협의회로 제출되었으며 지역사업 기본 배분액 66억 원과 2022년 주민참여예산 패널티 운영에 따른 감액 사업비 2억 8,500만 원 적용, 수의제 운영 컨설팅 읍면동 인센티브 5억원이 합산되어 총 154건에 68억 1,357만 8천 원의 지역사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지역사업 결정 현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예산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읍면동 지역사업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결정하여 154건 68억 1,357만 8천원의 사업이 설정되었습니다
- 저희들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읍면 4억, 동은 2억 원을 배분된 금액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성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삼양동 원성현 위원

- 사업비가 추가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우리가 올릴 때는 주민 참여 예산을 올릴 때는 2억 5천만 올려가지고 책정이 됐었는데 최근에 1억이 더 증액됐다고 3억 5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 그러면 이 표가 최근에 나온 자료가 아니고 앞전에 변경되기 전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라진 걸 다시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액수가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읍면동 지역사업비는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부분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기본 배분액이 66억입니다. 여기서 읍면동 패널티 금액 2억8천5백만원을 뺀 68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는 것인데 기준 편성액은 읍면은 4억 등은 2억 범위 내에서 편성된 사업으로 이미 읍면동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야말로 편성 한도액입니다.

기본 배분액이 한림읍은 4억인데 패널티가 예산 마진행이라든가 초과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패널티를 받고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내년도 사업이 컨설팅을 받았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림읍에 가는 예산이 4억 4,668만 2천 원이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고정된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이 건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보고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 상도1동 읍용발 위원

- 예 이건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전부 다 승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원안 동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지역회의를 다 거쳐가지고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해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원안 동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위원장(부시장)

- 예 의원님께서 원안 동의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 위원들

- 동의합니다.

■ 위원장(부시장)

- 1호 안건 읍면동 지역사회 결정 현황의 보고 건은 보고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부시장)

- 다음으로 안건 2-1호 편성불가유형 사업 및 심사제외 여부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은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자료 7페이지입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공모 접수와 지역회의에서 사업 발굴하여 지역참여사업 100건에 81억 617만 4천 원의 사업에 제출되었으며 편성불가유형 해당 사업이 14건에 12억 2천9백만 원, 읍면동 제출한도초과 사업이 15건에 16억 9천 3백만 원, 검토과정에서 조정된 사업이 10건에 3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제주시 사업편성 한도액은 기본 배분예산 42억원과 지역사업 패널티에 따른 감액 2억 8천5백만 원을 합하여 총 44억 8천 5백만 원으로, 심사를 통해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 제출된 사업에 대해 지난 8월 3일 각 읍면동 담당자와 관련 사업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행위허가 및 인허가 사항,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주민참여예산 편성 불가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편성 불가 유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 한림읍 상가리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부지가 국유지 도로로 영구적인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 애월읍 과지해수욕장 광장 좁지리 상징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조형물 설치 대상 부지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조형물 등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합니다.
- 애월읍 수산리 포제제복 및 제기 일체구입 사업입니다.
포제 제복 및 제기구입은 단순 자산취득 목적의 물품구입 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합니다.
- 애월읍 태양광 표지판 내 울타리 경관조명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태양광 표지판의 경우 도로안전 시설물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구간의 심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여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 애월읍 화랭이길 도로포장 사업입니다.

■ 일도2동 이호성 위원

- 죄송한데요.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자료에 받아서 아는 내용이니 간략히 넘어가도록 합시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설명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 편성불가유형 사업은 총 14건의 12억 2천 928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에 따른 패널티 또는 사업비 집행 불가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7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편성해야 될 사업이 기본 배분액 42억, 패널티 2억 8천 5백만 원이 추가되어 총 44억 8천5백만 원을

편성해야합니다.

44억 8천 5백만 원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되는데 제출된 사업이 아래쪽에 100건에 81
억이 제출되었습니다.

- 이거에 대한 사업이 아까 말씀한 뒤쪽에 편성불가사업이 14건의 12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읊면동, 관계 부서하고 사업별 논의를 거쳐 편성불가사업으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 저희들이 맨만하면 사업을 수용해야 하지만, 편성 후 사업의 미집행으로 불용이 발생한다든가 여러가지 절차 불이행으로 추진 과정에서 제외될 부분이 우려되어 편성불가유형 사항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구좌읍 김기범 위원

- 구좌읍의 공원 내 나무 섭터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여기가 우리 구좌읍의 그리고 제주시 내 마크골프 입원 등 지금 회원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근데 섭터가 지금 너무 없어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햇빛 차단이나 비가림 야간 조명까지 설치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 내 시청 체육진흥과에서 기점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회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나무 가지를 좀 쳐서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따로 체육진흥과에서 한 번 검토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 위원장(부시장)

- 이거는 사전에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 불이행 사업으로 이제 편성 불가한 부분이고요 사실 자체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나무가지 저는 부분이 이제 별도로 생각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공원조성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향후 앞으로 공원조성 수립계획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구좌읍 김기범 위원

- 임시로라도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자라던가 가지를 좀 쳐서 그 사이에에도 좀 쉴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라도 좀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들여서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까?

■ 오라동 고명철 위원

-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이 다른데 설치시공 사례가 있습니까?

■ 간사(기획예산과장)

- 지금 시청에 오시면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오라동 고명철 위원

- 그러면 이게 시청 앞에도 이게 사고 발생 위험 상황인데 시청 앞에는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간사(기획예산과장)

- 지금 오라동에서 오라동 관내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자치경찰단에 협의 결과, 이걸 자치경찰단에서 인수해 가지고 신호 연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를 안 받겠답니다. 그런 연계 문제점이 있고 수리가 필요한 고장이 났을 때 오라동에서 관할하지 못합니다. 그런 협의가 잘 안됐기 때문에 불가한 사업입니다.

■ 오라동 고명철 위원

- 이걸 사고 발생을 줄일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고 발생 위험 사업으로 검토됐던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공사례가 시청 앞에 있다는데, 그렇다면 시청 앞에는 우리가 사고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설치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설치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해야되는데, 그 사전 협의에서 자치경찰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 오라동 고명철 위원

- 이건 자치경찰단에서 검토할 사항입니까, 시청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닌겁니까?

■ 위원장(부시장)

-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 앞 설치 같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확실하게 효과가 증명된 게 지금 없어서 자치경찰청에서도 신호연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확대가 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라동 고명철 위원

- 그러면 앞으로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 도시건설국장

-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라동 고명철 위원

- 계속 현안 사업은 연중으로 수시 접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개선이 된다면 현안

사업으로 2억 신청을 또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간사(기획예산과장)

- 일단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라동 고명설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예. 문석희 위원님

■ 아라동 문석희 위원

- 다음이 아니라 그다음에 지역사업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사업 같은 경우에 각 동에 경쟁해서 3억까지 책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건으로 허가하고 3억 5천만 원 지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3억이 초과되어도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지역사업입니까. 지역참여사업입니까?

■ 아라동 문석희 위원

- 지역참여사업입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아라동에서 지금 신청한 게 3건에 4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지금 지역참여사업 같은 경우는 유통면 경우는 4억 8천, 등은 3억 5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4억 2천 2백만 원 중에 3억 5천을 빼면 7천 2백만 원이 초과되어야 부분이 빠진겁니다.

■ 아라동 문석희 위원

- 3억 5천까지 된다는 겁니까?

■ 간사(기획예산과장)

- 네. 3억 5천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 위원장(부시장)

- 현재 편성불가유형 사업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건 2-1호 편성불가유형 사업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편성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들 일등

- 않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편성불가유형 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부시장)

- 다음으로 안건 2-2호 제출한도초과 사업 심사 제외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과장님은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자료 10페이지입니다. 지역참여사업은 읍면동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 4억 8천만 원 동은 3억 5천만 원의 범위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를 초과하여 제출된 사업은 구좌읍 상도리 게이트블장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 외 14건에 16억 9천 3백만 원으로 해당 읍면동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한도초과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한도초과 사업은 아까 문석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별로 지역사업하고 지역참여사업이 한도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있어 사업들을 저희들이 제외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외시키는 부분은 총 15건에 16억 9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 의견이 있으면 말씀주십시오.

■ 삼양동 원성현 위원

- 지금 회의할 때 보면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조금 세심하게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제가 느끼는 바쁜 빨리 끝내고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럴 때 잡지 않으면 언제 얘기할 수 있을까합니다.
- 우리는 그냥 단지 3시에 모이라고 그러면 모여서 원안 통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당 받으려 왔나 이런 자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국장님들, 부시장님 모시고 언제 이런 부분을 얘기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중에서 현안사업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에 쓰려고 이런 부분들을 배제시키는지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현안 사업으로 13억을 갖다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 그 다음에 땅땅땅 결정되서 넘기버리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만 공원 내 나무 속 쉼터 만들기 사업은 어르신들 위한거고 이게 참여사업이잖아요 지역주민이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올려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앉아서 하는 건 싫고요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해줘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냥 아까처럼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빨리 보내는 건 싫습니다.
- 또 제가 이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오늘 마지막인데 한 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 불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관련한 사업. 우리는 올려도 행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가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끝고루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지역참여예산이 올라온 걸 어떻게 규정을 바꿔서라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하는 게 이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여 예산 한 1% 갖고 200억 갖고 이렇게 우리 모여라 말라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 빠진 불가사업들도 먼저 안 될 이유를 먼저 찾지 말고 끝나긴 했는데 여기 보면 체육진흥과 가정사용 하가로 충복허가 불가 그러면 구좌읍에 시설이 넘어가면 그냥 이런 부분들이 해제가 되는 겁니까? 한 쪽에서만 올리면 이게 충복이 아니고 바로 시행이 될 건가요?
- 근데 그 구좌읍에서 파크골프장을 못 갖는게 시설보수 관리 그다음에 거기 운영할 돈을 안 준다는데 체육진흥과에서 넘겨줘도 못 받겠다는데 그러면 저희들처럼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오늘은 3시간, 6시간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제주시가 발전할까 아닌가 제주도가 발전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끝내는게 수는 아닌거 같습니다.

■ 위원장(부시장)

-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편성불가 사업으로 선정 됐지만 위원님이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필요한데 편성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찍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민참여사업에 지원 했는데 여기에서 편성이 안 되니까 시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대체해서 편성해야겠다. 약간 그런 말씀 같지만, 이 부분 예를 들면 공원에 나무 쉼터 만들기 사업 저희들이 정자 설치하고 쉼터 설치 등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제 편성 불가 유형사업으로 됐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검토를 하던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릴 차안이라고 보이집니다.
- 여기에 지금 사업들이 정말 지역에서 애쓰게 사업을 기획을 해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안 된다. 무 자르 듯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다시 한번 좀 살피고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려야겠고 아까 행정절차 불이행 사업 등으로 사업이 지금

편성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도 저희들은 이제 별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자치경찰 이런 부분들도 경찰과 협의해서 이렇게 거치면 앞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차제에 어떤 검토를 통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저희들이 제출 사업의 상한이 없으면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으면 고민할 부분이 없는데 상한이 있고 실링 한도가 있다 보니까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추자면 위원장입니다. 저희들은 같은 세주도에 속해있어도 떨어진 성이라 회의도 아틀 삼일전 오고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보고 향당무개한 걸 느끼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기 지역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식도 상식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을 두 번 하면서 참여예산 과정이 많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4도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자료를 보면서 향당무개함을 느꼈습니다.
- 저희들 주무관님한테 회의할 때마다 저희 경험에 비춰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라고 누차 얘기를 해 전화 통화하면서까지 사업 내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을 보면 마치 추자도가 지역참여예산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무방비하게 올린 것 같아. 26개 읍면동 중 심사 제외에 추자면 8개가 지금 몰라 있습니다.
- 어느 부분이 소통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예산을 읍면에 4억8천을 배정할 때 저희들이 도에 알아봤을 땐 참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줘라. 이 얘기를 분명히 저는 구두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 있는 팀에 디 알아보고 시의 상부, 도의 상부 다 알아봐서 이런 사업이 될거다 하는 가정하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면 심사제외사업인 신양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이 2억7천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빼고 참여사업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추자는 주는 돈 4억8천 배정액도 못 받아서 2억만 가지고 참여예산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 이게 어디가 소통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도나 시에서 시행을 할 때 정확히 읍면에서 순위 만큼, 우선순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를 결정을 이렇게 우리가 죽 올렸지 않습니다. 그러면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대안을 보다 보면 2안에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부분에 걸려서 안 될 부분. 아까 말한 신양리의 소득증대 지원 사업이 어찌다 안 된다하면 다음 순위로 올라줘야지. 이 사업이 마치 가이드라인식으로 탁 잘라가지고 추자에 2억 1천만 원 안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님, 이게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공무원이 징계받아야 할 겁니다.

- 딱 명사가 돼 앉잖아요. 읍면은 4억8천 동은 3억5천인데 주는 돈도 못쓰는 읍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무슨 아라동 3억7천7백에서 가드라인이 이러니까 좀 줄여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걸 들고 어떻게 추자면에 가서 추자 주민등한테 추자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명청한 놈이고 지역에 살고 명청하니까 이 짓했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런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초에 그럼 4억 8천만 딱 올려라. 그럼 이게 법, 행정적 절차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차순위로 하게. 그래서 우선순위를 통해서 결정을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 8월 3일날 저는 바빠서 참석 통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팀장들하고 주무관이 와가지고 갔다 온 학의내용 결과 보고도 신양리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만 좀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와서 보니 자료가 이거 뭡니까. 이거 좀 답변 좀 해주세요.
- 전체를 모아놓고 하던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까 삼양동 위원장님은 초면입니다만은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사업 도정사업 각 실과에 뭐 합니까? 주민참여예산 확대해 놓으면 뭐 합니까? 도정참여나 시정참여 예산은 제가 잘못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시의 실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로 해야되지 말만 거창하게 지사님이 민선 8기 해가지고 거창한 대, 참여예산을 증액만 시켜줬다고 하지 시니 도기 차자에 버리고 우리 읍면에는 조금만 주는 그 행태는 뭡니까. 반드시 추자에는 저는 4억8천을 책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부시장)

- 네. 지역참여사업으로 올라가지 못한 부분들은 좀 아쉬움이 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종말 제출 사업이 100건의 81억원이 들어왔고 편성 불가 그다음에 한도초과 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신 평가대상 사업을 이제 78억으로 올렸습니다.
- 이 부분은 평가방식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올라갔다고 다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뻤든 평가방식을 통해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가 추후에 논의가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편성되거나 않을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간사(기획예산과장)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지침에 보면 지역참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업비의 120%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4억 8천, 동은 3억 5천인데 그건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 4억 8천, 3억 5천입니다. 불가 사업을 빼고서가 아닙니다.

- 그래서 주자면 같은 경우는 12건에 15억이 지금 제출되었고 여기에서 한도액 4억 8천에 초과되는 10억을 빼고, 나머지 4억 7천에 대해서 사업을 검토한 결과, 아까 불가 사업의 2억 7천만 원이 생겨서 결국은 2억이 되는 결과가 생겼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2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한다면 다른 읍면동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만약에 편성불가사업에 대해 대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그러면 도하고 시하고 따로 노는 겁니까.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도에 문의한 결과 4억 8천에 대해서 맞추라고 그러니까 추가 사업은 순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도 됩니다. 그 뜻은 뭐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항부터 4항까지가 4억 8천인데 그중에 2항이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 가이드라인에 걸려서 미집행 사업으로 집행을 못하게 될 사업이라 생각하면 다음 순위로 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 간사(기획예산과장)

- 그런건 아닙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그건 뭔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 간사(기획예산과장)

- 제출된 사업의 120%, 4억 8천입니다. 불가사업을 빼고가 아닌 제출될 금액이 4억 8천이기 때문에 15억이 제출되어서 거기서 4억 8천을 빼고 나머지를 초과사업으로 제외한 것입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 간사(기획예산과장)

- 도하고 똑같습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똑같으면은 왜 사업을 여러 가지 올려도 되고, 결국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까?

■ 간사(기획예산과장)

-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는 아까처럼 우리가 초과되는 사업이 어떤건지 모르기 때문에 4억 8천 한도 내에서 들어오는 사업만 검토하고 나머지 4억 8천 외는 초과 사업으로 빼는 겁니다.

■ 주자면 오영수 위원

- 그러면은 면 담당자나 팀장한테 정확한 책트를 전해야지. 면에 있는 팀장 주무관이 100% 이런 사업을 다 경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닌 팀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정확한 폐단을 정해서 4억8천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올려라. 이렇게 해야 되지 마구잡이식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올려라 하면은 여기서 잘리면 추자는 2억을 어디가서 대체합니까.

■ 간사(기획예산과장)

- 읍면동 지역회의가 이번에 달라졌잖습니까.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지금 지역사업을 최종 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걸 읍면동에서 결정하고 아까처럼 권한도 줬지만 이런 편성불가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 주자면 오영수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 간사(기획예산과장)

- 말씀해십시오.

■ 주자면 오영수 위원

- 읍면에 주무관이나 팀장이 전문직입니까? 전문직 아니니까 시에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사업에 올랐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정말로 이거는 가이드라인에 비해 너무 예산도 많고 아니라니까. 잘린 부분에 우선순위로 올려서 4억 8천을 추자면 맞춰줘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그냥 올라오니까 읍면에서 검토가 충분히 됩니까? 어디서 읍면이 100% 검토가 됩니까?

■ 간사(기획예산과장)

- 읍면에도 지금 담당자가 검토하고, 무서에서도 검토를 받아야합니다.

■ 주자면 오영수 위원

- 읍면에서 검토만 해 가지고 이거 올립니까? 시에서 관련 부서에다 올리지.

■ 간사(기획예산과장)

- 1차적으로 주민 지역회의에서 검토를 해야합니다.

■ 주자면 오영수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 주자면만 이거 병신 당하는 끌이에요. 그럼 주자면 주무관이 이거 책임져야 돼요. 팀장하고 안 되는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은 주자면이 4억 8천이면 참여예산이 4억 8천을 갖게끔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막 무격다짐 하면 되는거예요.

■ 간사(기획예산과장)

- 지금 문서도 다 갖습니다. 4억 8천을 내야하는데 15억을 제출한 겁니다.

■ 추자면 오영수 위원

- 문서를 받고 회의를 하면서 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라고 하니까 두 번째 사업이 안 되면 다음번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해야될 거 아닙니까

■ 삼양동 원성현 위원

- 추자 위원장님 이제 어느 정도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 일도2동 이호성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안건 처리가 다 된 이후에 기타 의견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균분적인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10여 년 동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도 똑같은 일정이 이미 잡혀져 있는데도 시행 시점도 늦고, 정해진 5월달 6월달부터 하라 그런데 의미를 두지 말고요.

- 지금 각 읍면동에서 사업을 올리면 어떤 곳들은 실과를 통해서 사전 검토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와서 결정되듯이 한 상황에서 불가된 곳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사진에 이미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 이미 끝나면 다 끝나야 하는 상황이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1년에 290억입니다. 물론 그러면 만약에 2년에 한 번씩 10억씩 받아도 자기 지역사업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읍면에 4억, 동에 2억씩인데 2년에 10억씩 받아도 충분한 돈인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저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읍면에 4억 동에 2억 이렇게 해서 너네 사업 찾아내,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 간사(기획예산과장)

- 검토 기간은 정해져 있어서요.

■ 일도2동 이호성 위원

- 압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현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잖아요. 있을 것이라 예측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대비나 어떤 방향론을 제시해야지, 항상 보면 정책에 대해서 하달식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그기에 맞춰서 간지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 지금도 보면 2-3호 안건을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80%하고 20%, 그나마 개선된 겁니다.